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82호)

- '99. 7. 15.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6. 18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9. 6. 30
- 다. 상정일자 : '99. 7. 15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90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가. 제안이유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이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소득지원을 위한 응자이나 응자 대상선정에 있어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 학생(한국방송통신대학제외)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자로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학금 지급의 자격기준으로서 생활안정기금의 응자대상에 적합치 않으므로 삭제(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응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1995.10.19 조례 제304호로 제정하여 1998. 5.28 조례 제376호로 개정한바 있으나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 학자금융자대상자 선정방법에서 “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방송통신대학제외)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B” 학점)인 자로서“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검토의견

- 본 조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있으므로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취지와 같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행조례 제2조제1호는 부칙 제2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동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2조제1호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 시행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1995.10.19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8조 융자금의 상환중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은 제5조제1항 중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의 내용과 표현이 상충됨으로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상환”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와 부칙 제2조가 충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답> 조례 제2조제1호는 부칙 제2조제1항으로 갈음하여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질> 제5조제1항과 제8조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주민에게 부담을 줄 일수 있도록 해준다면 제8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 제5조에서는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는 12회 균분상환할 수도 있으나, 제8조에서는 그것을 연 1회 상환하는 것으로 매월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표현 해놓은 것임.

질> '98년도에 13가구와 '99년도에 11가구를 지원했는데 학자금 지원여부는?

답> 현재의 지원실적은 '98년도에는 13건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11건을 신청받았으나 10건에 대하여 지급결정이 되었으며, 지금 대상중에는 학자금으로 지원한 실적은 없음.

질> 조례 제8조를 삭제 하든지, 제5조제1항의 후단을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고 뒷부분은 삭제하며,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조건을 별도로 두는 것이 어떤지 견해는?

답> 조례 제5조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고, 제8조는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가 바람직함.

질> 조례 제2조제1호에 있는 명문규정은 부칙으로 충분하므로 삭제하고, 제2호를 1호로, 제3호를 2호로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답> 조례 제2조제1호는 부칙 제2조제1항으로 갈음하고 삭제해도 문제가 없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수정동의안 발의(발의자 : 정웅섭 위원)

- 조례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를 1호로 하며, 제2조제3호를 2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로 되어 있는 것중 「이하로 하되」를 「이하로 한다」로 하고, 「하되」 이후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8조(용자금의 상환)에서 「용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연 1회 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음.(의제성립)

6. 수 정 안 의 요 지 : 별첨 수정안 참조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